
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에 대한 수정안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한정애 의원

찬 성 자 : 165인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전담재판부 구성시 사법부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, 대상사건에 대한 사면·감형 제한 등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헌법적 분쟁을 제거함으로써 내란,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에 대한 수정안
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
관한 특별법안(대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 “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
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”을 “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
관한 특별법안”으로 한다.

안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 총칙

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내란, 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
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를 보호하는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법은 내란·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·경제·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
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
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(이하 “대상사건”이라 한다)에

관하여 적용한다.

1.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
2.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
3.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·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
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

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 “의 규정은 준용한다”를 “에 따른다”로 하여 같은 조를 안 제3조로 한다.

안 제5조를 안 제4조로 한다.

안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안 제5조로 한다.

제5조(재판의 전속관할) ① 수사단계에서 압수·수색·검증·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(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,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의 청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안 제6조로 한다.

제6조(영장전담법관의 임명)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 심사를 전담할 법관(이하 “영장전담법관”이라 한다)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.

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안 제7조로 한다.

제7조(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) 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.

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.

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,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.

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삭제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) ① 「법원조직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,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(이하 “전담재판부 판사”라 한다)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(이하 “사무분담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 판사회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

거쳐야 한다.

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.

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안 제9조로하고 안 제13조를 안 제10조로 한다.

제9조(재판기간)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,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·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안 제11조로 한다.

제11조(재판의 중계 및 녹음·녹화·촬영) ① 제1심 재판(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)은 중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.

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

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(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)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·사생활·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(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)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,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안 제15조의 “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”를 “법원은”으로 하고 “재판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”을 “전담재판부 구성기준, 재판과정 등에 관해 언론을 통한 설명”으로 하여 같은 조를 안 제12조로 한다.

안 제16부터 안 제23조까지 삭제하고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안 제13조(종전의 안 제24조)로 한다.

제13조(제보자등의 보호 등) ① 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·신고·진정·고소·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(이하 “제보등”이라 한다)한 자(이하 “제보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장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보자등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본다.

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

지원을 할 수 있다. 제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해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4장을 준용한다.

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,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·면제하거나 「형법」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.

안 제13조(종전의 안 제24조)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제보자등의 보호 조치

안 부칙 제1조제2항을 삭제하여 안 부칙 제1조를 안 부칙제1조제1항의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안 부칙 제2조(종전의 안 부칙 제3조)로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하여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	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안
<u>< 신 설 ></u> 제1조(목적) 이 법은 12·3 윤석 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, 제보 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내란, 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 행과 제보자를 보호하는 등 형 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대상사건)이 법의 적용대상 은 12·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 건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 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·3 비 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사건 으로 한다.	제2조(적용대상) 이 법은 내란· 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건 중 정치·경제·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 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 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 건(이하 “대상사건”이라 한다) 에 관하여 적용된다.

<신 설>	1. 「형법」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
<신 설>	2.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
<신 설>	3.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·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
<u>제3조(법관의 제척)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·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</u>	<삭 제>
<u>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법원조직법」, 「형사소송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	<u>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-----</u> ----- ----- -----에 따른다.
<u>제5조(우선효력) (생략)</u> <신 설>	<u>제4조(우선효력) (원안과 같음)</u> <u>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</u>
<u>제6조(전속관할)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·수색·검증·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</u>	<u>제5조(재판의 전속관할)① 수사단계에서 압수·수색·검증·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(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,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</u>

< 신 설 >

< 신 설 >

제7조(영장전담법관의 임명)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·수색·검증·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(이하 “영장전담법관”이라 한다) 2명 이상을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.

제8조(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)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.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제1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

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제6조(영장전담법관의 임명)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(이하 “영장전담법관”이라 한다)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.

제7조(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)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.

담한다.

②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,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.

< 신 설 >

제9조(재판관할 등)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②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이 이송된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항소심전담재판부의 설치

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.

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,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.

< 삭 제 >

< 삭 제 >

및 구성)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.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.

②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,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.

제11조(항소심 재판관할 등)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②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이 이송된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.

< 신 설 >

< 삭 제 >

제8조(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)

① 「법원조직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회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,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(이하 “전담재판부 판사”라 한다)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(이하 “사무분담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 판사회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회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재판기간)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,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)
(생략)

제14조(재판의 중계 및 녹음·녹화·촬영)① 대상사건에 대한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을 목적으로 한 녹음·녹화·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판기간)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,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·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)
(원안과 같음)

제11조(재판의 중계 및 녹음·녹화·촬영) ① 제1심 재판(공판 준비기일은 제외한다)은 중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.

< 신 설 >

< 신 설 >

제15조(사건의 대국민보고) 법원
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
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과정
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
수 있다.

제16조(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
회)①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

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
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
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
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
녹화(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
다)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
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·
사생활·국가기밀 등을 포함한
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
(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
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
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
다)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, 판
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
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
계와 관련하여 민사상·형사상
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
제12조(사건의 대국민보고) 법원
은 -----
----- 전담재판
부 구성기준, 재판과정 등에 관
해 언론을 통한 설명-----
-----.

< 삭 제 >

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(이하 “전담재판부후보자”라 한다)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.

1.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

2.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3명

3. 「법원조직법」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
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추천위원회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각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제7조,

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한다.

⑦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(판사회의)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「법원조직법」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.

< 삭 제 >

제18조(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)

< 삭 제 >

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

하여야 한다.

제19조(추천위원회의 회의)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 6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추천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)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법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법원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제21조(비밀누설의 금지)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

< 삭 제 >

< 삭 제 >

< 삭 제 >

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
아니 된다.

제22조(구속기간과 갱신) ① 대상
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「형사소
송법」 제92조의 경우에도 불구
하고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
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
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
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
수 있다.

③ 「형사소송법」 제22조, 제298
조제4항, 제306조제1항 및 제2항
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
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
체포·구속·구금 기간은 제1항
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
니한다.

제23조(사면 및 감형의 제한)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사람은 「사면법」 제8조 및
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면·감형
·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다
만,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
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

< 삭 제>

< 삭 제>

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로 유죄
확정된 자

2. 「균형법」 제2편 제1장의 죄
로 유죄 확정된 자

<신 설 >

제24조(제보자등의 보호 등) ①

제보자등은 정보 제공 또는 제
공 의사로 인하여 해고, 정직, 감
봉,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
아서는 아니된다.

② 국가는 제보자 보호와 관련
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
하여야 한다.

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
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보자등이 내란죄 기타 관

제3장 제보자등의 보호 조치

제13조(제보자등의 보호 등) ①

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
보·신고·진정·고소·고발을
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(이
하 “제보등”이라 한다)한 자(이
하 “제보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
해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
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장을
준용한다. 이 경우 제보자등은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
공익신고자로 본다.

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
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
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
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
해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제4장을 준용한다.

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「형

런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
자진 신고 또는 진술로 수사에
현저히 기여한 경우, 관계기관
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
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
담재판부는 「형법」 제62조에
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
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
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
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 법
시행 후 2주 이내에 구성을 완료
하여야 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대상사
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
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다
만, 제23조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9조제2항에 따
라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
송하는 경우 이전까지 구속되어
있던 기간은 제22조제1항 및 제

법」이나 그밖의 법률을 위반한
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
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,
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법
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
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
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
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·면제하
거나 「형법」 제62조에도 불구
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
부터 시행한다.

< 삭 제 >

< 삭 제 >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
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
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하여 제5
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

2항의 기간에 산입한다.

아니한다.

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내란, 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를 보호하는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법은 내란·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·경제·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(이하 “대상사건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적용된다.

1.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
2.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
3.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·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법원조직법」,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다.

제4조(우선효력)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

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

제5조(재판의 전속관할) ① 수사단계에서 압수·수색·검증·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(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,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제6조(영장전담법관의 임명)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 심사를 전담할 법관(이하 “영장전담법관”이라 한다)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.

제7조(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) 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.

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.

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,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

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.

제8조(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) ① 「법원조직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,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(이하 “전담재판부 판사”라 한다)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(이하 “사무분담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 판사회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재판기간)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,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·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)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참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판의 중계 및 녹음·녹화·촬영) ① 제1심 재판(공판준비기일

은 제외한다)은 중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.

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(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)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·사생활·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(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)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,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2조(사건의 대국민보고)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 구성기준, 재판과정 등에 관해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3장 제보자등의 보호 조치

- 제13조(제보자등의 보호 등) ① 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·신고·진정·고소·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(이하 “제보등”이라 한다)한 자(이하 “제보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장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보자등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본다.
- 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해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4장을 준용한다.
- 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,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·면제하거나 「형법」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하여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